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95번
----------	-------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주용태)

### 가. 제안이유

- 운현궁(사적 제257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 3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재로서,
- 국가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행사를 제공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개요

- 사무명 : 운현궁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3년 ('22.1월 ~ '24. 12월)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 연772,434천원 (산출근거 : '22년 운영예산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373,870천원(10명) / 운영비 136,343천원 / 행사비 150,026천원 / 일반관리비 14,701천원 / 이윤 30,000천원 / 부가가치세 67,494천원

###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시민이용형 시설의 관리·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다수 직렬의 인력 확보와 인건비 예산확대 등의 부담이 적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처가 유연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 홍보 수단 제작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 위탁사무

-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 운현궁 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역사체험, 교육 등 운현궁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운영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 4)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시설규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공간구성 : 노안당 · 노락당 · 이로당, 수직사, 전시관, 기획전시실 등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3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사적 제257호 운현궁의 위탁기간 만료(2021.12.31.)로 민간위탁(재위탁)<sup>1)</sup>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4호)

## 나. 위탁운영 현황

- 운현궁은 조선조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곳으로 대지 7,100 $m^2$ 에 전통한옥 6동(1,299.36 $m^2$ )으로 1998년 6월 복원되어 현재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부터 ‘예문관’을 시작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3년 단위로 ‘서울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예문관’, ‘한국의 장’을 거쳐 현재 ‘(주)블렌트’에 사무위탁을 해오고 있음.

위탁사무는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운현궁 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울특별시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역사체험, 교육 등 운현궁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운영,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기타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민간 위탁 추진 현황〉

1차 : 1998.06.18 ~ 2000.12.31(3년, 예문관)
2차 : 2001.01.01 ~ 2003.12.31(3년, 서울문화연구소)
3차 : 2004.01.01 ~ 2006.12.31(3년, 명원문화재단)
4차 : 2007.01.01 ~ 2009.12.31(3년, 예문관)
5차 : 2010.01.01 ~ 2012.12.31(3년, 한국의 장)
6차 : 2013.01.01 ~ 2015.12.31(3년, 한국의 장)
7차 : 2016.01.01 ~ 2018.12.31(3년, 예문관)
8차 : 2019.01.01 ~ 2021.12. 31(3년, (주)블렌트)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21.5.)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재위탁이 가능한 60점 이상의 점수(72점)를 받았으며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재계약이 적정('21.5.)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재계약을 판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의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주)블렌트’에 대한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품구입, 계약 등 일반지출 관련 서류가 부실, 지출결의서와 소득세 증빙서류의 불일치 등 회계관리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음.

〈서울 운현궁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요약〉

분 야	지적 사항	세부 내용	조치 사항
2019년	1.회계관리	회계관리 통일성 필요	보조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처리방식을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지시
	2.일반지출 관련서류부실	물품구입 등 일반지출시 관련서류 부실	증빙서류에 구입물품별 사진 첨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2020년	1.예산변경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된 부분 철저한 정산 필요	1~4분기 정산서, 계약서, 견적서 등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세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2.광고집행비	SNS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광고 담당자의 신출근거 부실	해당 과업별 증빙서류와 함께 과업별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3.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지출결의서와 소득세 증 빙서류의 불일치	해당지출결의서마다 불일치 사유와 상세 내역 기입후 보고
	4.일반지출시 관련서류 부실	일반지출시 관련서류 부실	첨부서류 착오로 인한 오류를 바로 잡아서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해야 하는 경우]

1.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2.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3. 위탁기간 중 지도, 점검,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4.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운현궁의 운영은 '98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있고,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다는 점의 단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라. 종합검토 의견

- 민간위탁은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 인력감축과 관리 전문성 제고 등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입을 통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민간위탁계약에서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측정이 어렵고 위탁비용 산정이 정확한 근거가 부족해 비용절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업체 선정 후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재운	02-2180-8118

# 2021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도래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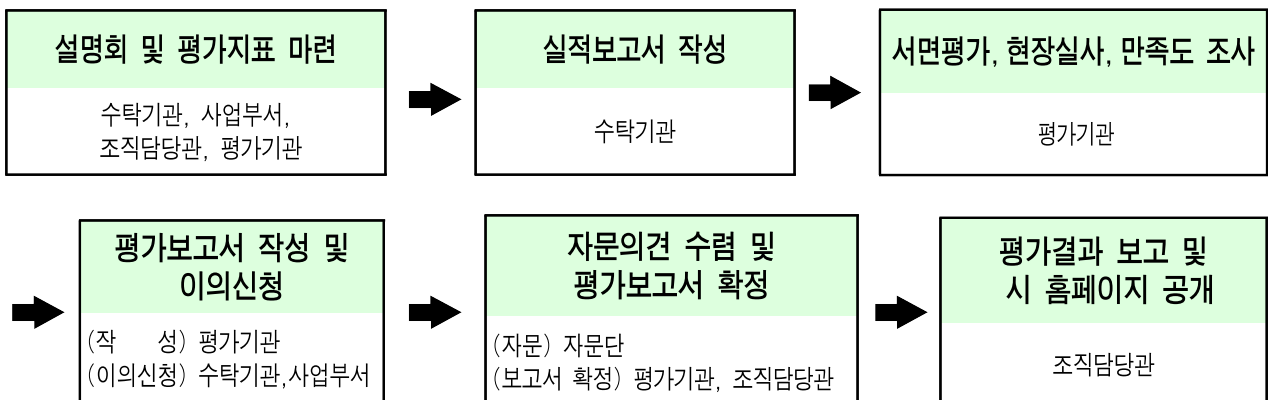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관련 규정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평가기간 : '21. 2. 22. ~ '21. 5. 6. (제2차)
- 평가대상 : DMC단지관리 등 27개 위탁사무
- 평가기관 : 외부 전문기관(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내용 : 공통지표, 개별지표, 사용자 만족도 (총100점)
  - 공통지표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 개별지표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 사용자 만족도 : 시민 체감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 ○ 평가절차



**평가결과**

- 제2차 평가결과 : 총27개 민간위탁 사무 실시, 평균 82.15점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야함(조례 제12조)
  - 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공개모집 등)(관리지침)

**사무별 주요 성과 및 과제**  
운현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비정규직 1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여 정규직화 비율 100%</li> <li>- 예산집행일을 월 2회(15일, 30일)에서 월 3회(10일, 20일, 30일)로 조정하여 행사투입인력. 공연단체, 출연진들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함</li> <li>- 유튜브 채널(운현궁TV)를 개설 및 연예인 출연 콘텐츠 개발 통해 성공적 홍보</li> <li>-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운현궁 주요 건축물의 내부부터 외부까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VR개발과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li> </ul>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정확성 요구</li> <li>- 채용 요건에 행사 및 체험운영, 시설, 야간방호에 만 60세 이상 우대조건은 불필요</li> <li>- 교육 목적 방문이 많은데 향후 구한말 시대상과 연계하여 교육 콘텐츠 발굴 필요</li> <li>- 사업목표 시, 운현궁 방문객에 대한 목표값 부재 및 목표설정 도전이 낮은 수준</li> </ul>

#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95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운현궁(사적 제257호)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 소유 문화재로서,
- 나. 국가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명소로서 특화 및 거점화시키고자,
- 다.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사무명 : 운현궁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3년 ('22.1월 ~ '24.12월)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재위탁)
- 소요예산 : 연772,434천원 (산출근거 : '22년 운영예산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373,870천원(10명) / 운영비 136,343천원 / 행사비 150,026천원 / 일반관리비 14,701천원 / 이윤 30,000천원 / 부가가치세 67,494천원

##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 추진 필요성

- 시민이용형 시설의 관리·운영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다수 직렬의 인력 확보와 인건비 예산확대 등의 부담이 적고,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처가 유연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 홍보 수단 제작이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다. 주요 위탁사무

- 운현궁 운영 및 유지·관리
- 운현궁 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역사체험, 교육 등 운현궁에 적합한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운영
- 브로슈어 제작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기타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4(운니동)
- 시설규모 :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 공간구성 : 노안당 · 노락당 · 이로당, 수직사, 전시관, 기획전시실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2. 시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3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 정윤서 (☎ 2133-2628)